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지 역 개 발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는 총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고용규모가 300인 이상인 곳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의 건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총투자금액 및 고용규모를 완화하여 다양한 지방의 성장거점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누적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50조)

“총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고용규모 300인 이상”을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고용규모 100인 이상”으로 각각 변경함

나. 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차수(별표2)

적발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부과된 과태료 차수의 다음 과태료 차수를 부과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를 “500억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이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으로 총투자금액이 <u>1,000억원</u> <u>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u> <u>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u> <u>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u> <u>낙후지역은 총투자금액 500억</u> <u>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 신규</u> <u>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u> <u>다.</u> ② · ③ (생 략)	제50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① ----- ----- ----- ----- ----- <u>500억원 이</u> <u>상이거나 100명 이상</u> ----- ----- --. <u><단서 삭제></u>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65